

20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호	1819
-----------	------

2023. 06. 17.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006,879	2,809,143	197,736	7.0
일반회계	596,411	546,394	50,017	9.2
경상적세외수입	48,321	321	48,000	14,953.3
임시적세외수입	5,207	5,207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0	230	-	-
국고보조금등	538,947	538,947	-	-
보전수입등	3,706	1,688	2,017	119.5
주택사업특별회계	2,400,873	2,254,091	146,782	6.5
경상적세외수입	719,885	633,971	85,914	13.6
임시적세외수입	44,528	44,528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88	888	-	-
국고보조금등	380,656	332,633	48,023	14.4
국내차입금	324,000	324,000	-	-
보전수입등	143,186	216,301	△73,116	△33.8
내부거래	787,730	701,769	85,961	12.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95	8,658	937	10.8
경상적세외수입	96	96	-	-
임시적세외수입	3,720	3,72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272	4,272	-	-
보전수입등	937	-	937	순증
내부거래	571	571	-	-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643,450	3,453,219	190,231	5.5
행정운영경비	1,146	1,146	-	-
재무활동	1,218,813	1,125,959	92,854	8.2
사 업 비	2,420,336	2,323,097	97,239	4.2
예 비 비	3,155	3,016	139	4.6
일반회계	1,237,710	1,194,997	42,713	3.6
행정운영경비	1,146	1,146	-	-
재무활동	414,356	371,888	42,468	11.4
사 업 비	822,207	821,963	244	-
주택사업특별회계	2,398,074	2,251,492	146,582	6.5
재무활동	797,256	747,771	49,485	6.6
사 업 비	1,597,734	1,500,740	96,994	6.5
예 비 비	3,084	2,981	103	3.5
도시개발특별회계	59	59	-	-
사 업 비	59	59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607	6,671	936	14.0
재무활동	7,200	6,300	900	14.3
사 업 비	336	336	-	-
예 비 비	71	35	36	102.9

II.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주택정책과)	*배당금수입	SH공사 '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금 증액 편성	48,000	-	48,000	순증
일반회계 (지역건축안전센터)	국고보조금사용잔액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2,017	-	2,017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정책과)	공유재산임대료	둔촌주공 재건축 임대주택 조기입주 예상에 따른 임대수입 증기분	670,177	584,263	85,914	14.7%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국비 반영	8,985	2,000	6,985	349.3%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기금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등 국비 증감 반영	370,516	329,478	41,038	12.5%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순세계잉여금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49,353	82,650	△33,297	△40.3%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정보과)	순세계잉여금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30,212	116,902	△86,690	△74.2%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축진사업과)	순세계잉여금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36,115	-	36,115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9,757	-	9,757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정보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 집행잔액	1,000	-	1,000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29,234	-	29,234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정보과)	기타회계전입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23년도 결산 정산금 반영	191,446	185,933	5,513	2.9%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축진사업과)	기타회계전입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23년도 결산 정산금 반영	191,446	185,933	5,513	2.9%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예수금수입	국민계정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증액	340,200	294,500	45,700	15.5%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공동주택지원과)	순세계잉여금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937	-	937	순증
세입예산 추경요구액					197,736	

Ⅲ.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별표(*)는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10개)를 제외한 사업비 등임.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기본경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증액	606	600	6	1.0%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 2차사업 시행 결정	(×8,985) 29,950	(×2,000) 2,000	(×6,985) 27,950	1,397.5%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 집행잔액 등 반납	3,385	-	3,385	순증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유사사업 추진으로 지원대상 감소	115,023	115,603	△580	△0.5%
전략주택공급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국비 추가교부	(×58,462) 84,567	(×11,580) 16,541	(×46,882) 68,026	411.3%
공공주택과 (일반회계)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 운영	위원회 예산 조기 소진 (현재 집행률 77%)	40	25	15	60.4%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 등 매입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매입비 조기 지급 필요	35,763	29,394	6,369	21.7%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위한 관리방안 추진	254	144	110	76.4%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주차장 부지 공공주택 건설 공정 지연	(×1,446) 2,262	(×2,396) 3,212	(×△950) △950	△29.6%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면목행정문화복합타운 공공주택 건설 공정 지연	(×22,633) 22,633	(×27,527) 27,527	(×△4,894) △4,894	△17.8%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추진위/조합 공공지원	4월말 기준 87% 집행 (12개소 추가지원 필요)	826	500	326	65.3%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사장 갈등관리 강화	478	271	207	76.4%
건축기획과 (일반회계)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초과 편성분 감액	68	74	△6	△8.1%
재정비축진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담심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투자심사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 설계비 감액	1,182	1,682	△500	△29.7%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한옥 4.0 재창조 관련 윤씨기옥 리모델링 추진	1,053	423	630	148.9%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사업특별회계)	*휴먼타운 2.0 이자차액 보전	휴먼타운 구역 내 이차지원으로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추진	300	-	300	순증
지역건축안전센터 (일반회계)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민간건설현장 확대 적용	229	-	229	순증
지역건축안전센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	2,207	-	2,207	순증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국민계정)	일반회계→주택사업특별회 계 전출금 증액	29,234	-	29,234	순증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국민)	결산에 따른 예산 정리를 위한 예비비 증액	1,105	1,099	6	0.6%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에 따른 예산 정리를 위한 예비비 증액	71	35	37	105.7%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3년도 결산 후 발생한 여유자금 예탁	7,200	6,300	900	14.3%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도정)	결산에 따른 예산 정리를 위한 예비비 증액	959	885	74	8.3%
주거정비과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정계정)	'23년도 결산 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금 반영	191,446	185,933	5,513	3.0%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도정계정 여유자금 발생에 따른 예탁금 증액	527,000	523,000	4,000	0.8%
재정비축진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재축)	결산에 따른 예산 정리를 위한 예비비 증액	1,026	998	29	2.9%
재정비축진사업과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축계정)	'23년도 결산 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금 반영	191,446	185,933	5,513	3.0%
재정비축진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재축)	재축계정 여유자금 발생에 따른 예탁금 증액	252,800	210,700	42,100	20.0%
세출예산 추경요구액					190,236	

IV. 검토의견

1) 총괄

- 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77억 3천6백만원(7.0%) 증액된 3조 6억 8천8백만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2억 3천1백만원(5.5%) 증액된 3조 6,434억 5천만 원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500억 1천7백만원(9.2%)이 증추경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67억 8천2백만원(6.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9억 3천7백만원(10.8%)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427억 1천3백만원(3.6%),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65억 8천2백만원(5.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9억 3천6백만원(14.0%)이 각각 증추경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기정 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증감률
세입	총계	2,809,143	197,736	3,006,879	7.0%
	일반회계	546,394	50,017	596,411	9.2%
	주택사업특별회계	2,254,091	146,782	2,400,873	6.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658	937	9,595	10.8%
	도시개발특별회계	-	-	-	-
세출	총계	3,453,219	190,231	3,643,450	5.5%
	일반회계	1,194,997	42,713	1,237,710	3.6%
	주택사업특별회계	2,251,492	146,582	2,398,074	5.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671	936	7,607	14.0%
	도시개발특별회계	59	-	59	-

2) 세입예산안

- 금회 일반회계는 배당금수입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따라 증추경하였음.
 - “배당금수입”은 SH공사의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지난해 11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SH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적자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SH공사의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45%인 480억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임.
 - SH공사 배당금수입은 '23년 제1회 추경예비심사 당시 SH공사의 당기 순이익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과소·과다추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세입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같은 사유로 증추경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억 1천7백만원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반납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세출예산으로 동시에 편성하여 국가에 반납할 예정임.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공유재산임대료” 859억 1천4백만원 증액은 둔촌주공 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료 수익이며, 그 밖에 “기타회계전입금”, “예수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23년도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를 위한 것임.
 -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2015년 7월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최초로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으로 2022년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일반분양('22.12.6.~12.8.)을 마치고 2023년 1월 17일 공공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래 금년 6월 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여, 11월 말 입주예정임.

- 사업 전체 세대수 12,032세대 중 1,046세대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장기전세주택 전체 전입기간 4개월 중 1개월(12월)분에 대한 예상수입액 859억 1천4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로 준공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이력이 있는 대상지로서 세입의 부족징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준공이 11월에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겠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는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9억 3천7백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증추경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	세출
주택사업특별회계		146,782	146,782
기정예산	추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임대료 85,914 (670,177 → 584,263) ◦ 국고보조금 6,985 (2,000 → 8,985) ◦ 기금 41,038 (329,478 → 370,516)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46,882 (11,580 → 58,462) -추가8만호 △950 (2,396 → 1,446) -추가8만호(통합공공임대주택) △4,894 (27,527 → 22,6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580 (115,603 → 115,023)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7,950 (2,000 → 29,950) ◦ 국고보조금 반환(국민) 3,385 (153 → 3,538) ◦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68,026 (16,541 → 84,567)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6,369 (29,394 → 35,763) ◦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950
2,254,091	2,400,873		

구분		세입	세출
		◦ 순세계잉여금 $\Delta 83,872$ (199,553 → 115,680)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757 (0 → 10,757) ◦ 기타회계전입금 40,261 (371,865 → 412,126) -일반회계 전입금 29,234 (0 → 29,234)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 11,027 (371,865 → 382,89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700 (294,500 → 340,200)	(3,212 → 2,262) ◦ 공공주택 건설(추기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Delta 4,894$ (27,527 → 22,633)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110 (144 → 254) ◦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326 (500 → 826) ◦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207 (271 → 478) ◦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Delta 500$ (1,682 → 1,182) ◦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630 (423 → 1,053) ◦ 휴먼타운2.0 이자차액 보전 300 (0 → 300)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200 (도시공간본부) (965 → 1,165) ◦ 예비비 102 (1,882 → 1,98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6,100 (733,700 → 779,8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37	937
기정예산	추경(안)	◦ 순세계잉여금 937 (0 → 937)	◦ 예비비 37 (34 → 7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900 (6,300 → 7,200)
8,658	9,595		

3) 세출예산안

가) 총괄

○ 세출예산은 총 1,902억 3천만원 증액되었음.

- 그러나,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874억 증액)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1,028억원 증추경되었음.

- 이는 13개 사업에 1,097억 6천만원이 증액(국비 538억 6천7백만원, 시비 558억 9천3백만원)되었음에도, 5개 사업에서 69억 3천만원(국비 58억 4천4백만원, 시비 10억 8천6백만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임.

〈'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 회계별 사업별 증액 및 감액 요구액〉

■ 증액 - 일반회계(4건)	추경요구액(국비포함)	
기본경비		6백만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15백만원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2억	29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22억	7백만원

■ 증액 - 주택사업특별회계(9건)	추경요구액(국비포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79억	50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3억	85백만원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680억	26백만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63억	69백만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1억	10백만원
추진위/조합 공공지원	3억	26백만원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2억	7백만원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	30백만원
휴먼타운 2.0 이자차액 보전	3억	원

■ 감액 - 일반회계(1건)	추경요구액(국비포함)	
기본경비		△6백만원

■ 감액 - 주택사업특별회계(4건)	추경요구액(국비포함)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5억	80백만원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9억	50백만원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48억	94백만원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5억	원

나) 세부사업별 검토

-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사업별설명서 1157p, 예산서 323p)은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와 임차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가구에 대한 지원금액 5억8천만원을 감추경 하는 사항임.
 - 이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사업으로, 법적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보건복지부)가 지연¹⁾됨에 따라 사업 시행 시점이 금년 5월 말에서 8월로 연기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되었고, 금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자가 일부 중첩²⁾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유사사업 추진으로 지원대상 감소	115,023	115,603	△580	△0.5%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별설명서 1162p, 예산서 323p)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79억 5천만원(국비 30%, 시비 70%)을 증액편성 하였음.

1)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내부사정으로 회신기한을 연장하여 5월 23일에 회신하였음.

2) 금년 1월 22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연령대로 확대한다는 지침이 전달되었음.

- 당초 집행기관은 지난해 시행된 1차사업의 잔여사업에 필요한 100억원을 2024년으로 명시이월³⁾한 상황에서, 금년 1월 26일부터 시작된 2차사업⁴⁾⁵⁾을 위해 2월 13일 교부된 국고보조금 20억원을 기간제 근로자 고용 등을 위하여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 2차사업 시행 결정	(×8,985) 29,950	(×2,000) 2,000	(×6,985) 27,950	1,397.5%

(2024년 04월 30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2	(x11,940,000) 38,329,440	(x-) 0	(x-) 0	(x11,940,000) 38,329,440	(x1,351,990) 4,374,974	(x9,977,075) 33,324,226	(x610,935) 630,240
2023	(x6,420,000) 21,400,000	(x9,977,075) 33,324,226	(x-) 0	(x16,397,075) 54,724,226	(x8,310,471) 27,717,715	(x3,000,000) 10,000,000	(x5,086,604) 17,006,511
2024	(x2,000,000) 2,000,000	(x3,000,000) 10,000,000	(x-) 0	(x5,000,000) 12,000,000	(x1,994,458) 6,611,295	(x-) 0	(x3,005,542) 5,388,705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지침에 따른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주재로 개최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6)에 따른 후속조치⁷⁾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추진⁸⁾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 3)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22.8.~'23.8.)으로 국고보조(국비 30%, 시비 70%)를 통해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모집 인원 15,247명이 선정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국고보조금을 1억원으로 통보하였음. 8월 접수된 인원 중 추가선정 될 인원 약 2,000명으로, '24년 계속지원 대상이 되는 인원은 10,000여명으로 추정되며, 대상인원들도 지원 개월수가 상이하여 평균 5개월 지원을 예상하여 100억원을 명시이월함.
-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지침」(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482, '24.1.26)
- 5) 2024회계연도 예산심사 이후인 12월 26일에 국토교통부가 2차사업의 국고보조금을 확정내시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6)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권한·역량 총동원”(2024.5.1. 보도자료)
- 7)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2024.5.27. 보도자료)
- 8) 중앙정부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사업추진은 각 지자체가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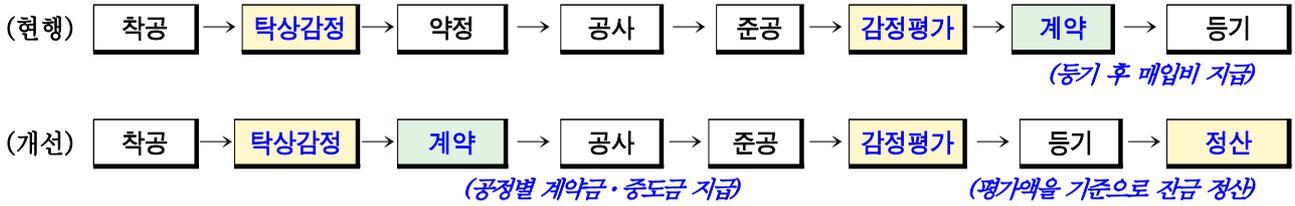
-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사업별설명서 1165p, 예산서 325p)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청년안심주택(舊 역세권청년주택)에서 공급되는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⁹⁾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1일 교부된 국비 468억 8천2백만원을 포함한 680억 2천6백만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임.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전략주택공급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국비 추가교부	(×58,462) 84,567	(×11,580) 16,541	(×46,882) 68,026	411.3%

- 청년안심주택 선매입은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사업초기부터 토지지분 및 임대주택을 공공화함으로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임대기간 이후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주거복지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음.
- 이 사업은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국고보조금 지원과 실매입비의 차액을 서울시와 SH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되는데, 서울시는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자, 그간 준공 후 일괄지급한 선매입비를 착공 후 공정별로 지급하고, 선매입 배율을 해당 사업장의 준공시기 기준 추가 투입 사업비 범위 내로 확장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¹⁰⁾을 마련하였음.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전체 호수의 50%) 및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20% 내외)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30%)을 정부지원(국고보조 및 기금융자) 및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아 SH가 선매입
 10) 「청년안심주택 SH공사 선매입 기준 개선방안」(2024.3.6. 행정2부시장 방침 제41호)



- 금회 추경안은 현재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 내 2,704호¹¹⁾를 매입¹²⁾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민생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 동력을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여건이 부실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의 준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임대주택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음.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최근 3년 추진실적>

2022년도	○ 2022년 제1,2차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공고 - 14개소 총 617호 매매이행협약 체결
2023년도	○ 2023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공고 - 13개소 653호 매매이행협약 체결
2024년도	○ 19개소 997호 매매이행협약 체결 추진 중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사업별설명서 1169p, 예산서 325p)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지구계획, 사업계획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총 8회(본위원회 4회, 소위원회 4회)분에 해당하는 1천5백만 원을 증추경 하는 것임.

11) 일반사업장 1,101호, 재무여건 부실사업장 819호, 워크아웃 사업장(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사업을 말함) 748호
 12) 전액 SH공사의 전출금 및 출자금으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주택과 (일반회계)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 운영	위원회 예산 조기 소진 (현재 집행률 84%)	40	25	15	60.4%

- 금년도 본예산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총 6회(본위원회 2회, 소위원회 4회)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여 2천5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2년도와 '23년도에 각각 6회, 4회가 개최되어 점차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삭감된 데 따른 것으로, '24년도 5월 기준, 총 3회가 개최(본위원회 2회, 소위원회 1회)되어 예산의 84%(1천3백만원)이 집행된 상황임.

- 향후 공공주택복합화사업, 노후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 총 27건의 사업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이 예상됨에 따라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사업별설명서 1173p, 예산서 326p)은 시책사업인 역세권장기전세주택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¹³⁾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을 위하여 63억 6천 9백만원을 추가편성하려는 것임.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 등 매입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매입비 조기 지급 필요	35,763	29,394	6,369	21.7%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② 제1항제6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19개 사업대상지에서 979호를 매입하기 위하여 293억 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조합의 금융부담 경감, 공사비 인상에 의한 조합·시공사 간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사업여건을 개선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24년 3월 15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7조의3(14)에 근거하여 6개 구역 335호에 대한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조기지급하려는 것임.
- 이 사업은 최근 금리 및 건설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의 후속조치로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매입비용을 지급한 대상지가 차질없이 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사업별설명서 1177p, 예산서 326p)은 '18년 말 발표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현재 북부간선도로 등 65개 부지에서 시행 중이며, 계획 물량(7.6만호) 중 2.3만호의 공급실적을 달성했음.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 연도별 공급계획 및 실적〉

(단위 : 호, '23. 6월 실적 기준)

사업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획 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공공주택건설 (추가8만호)	4,040	4,227 (105%)	11,570	8,505 (74%)	24,325	7,819 (32%)	36,387	3,213 (9%)	종료		76,132

- 금회 추경안은 ‘청석주차장’¹⁵⁾ 및 ‘한누리주차장’¹⁶⁾ 공공주택건설사업이

14)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15) '21년 12월 착공했으나,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오염토 발생 및 정화조치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고, '24년 1월부터 지하층 골조공사 진행 중임.

계획안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준공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청석주차장 4억 6백만원, 한누리주차장 5억4천4백만원)을 감액하는 사안임.

○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별설명서 1177p, 예산서 326p)은 `18년 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유희부지 활용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과 지역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임.

- 해당사업은 전액(275억 2천7백만원) 국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회 추경안은 ‘면목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층당 적정 세대수 배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의 재검토 및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시·구 간 협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 분 48억 9천4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사업별설명서 1187p, 예산서 326p)은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가운데, 이에 필요한 운영비 및 근무자 수당 지급 등을 위해 1억 1천만원을 증추경 하였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위한 관리방안 추진	254	144	110	76.4%

16) '22년 6월 착공했으나, 동작구의 주차장 추가확보 요청에 따라 공사가 일시중지 되었다가, '24년 6월 공사 재개를 준비 중임.

- 이 사업은 「주택법」 제14조, 제93조, 제94조17)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피해자 예방 등을 위하여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으로 1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0년 1월, 지역주택조합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법」 상 일몰기한이 도입18) 되고, 서울수도 조합운영 정상화를 위한 실태조사

- 17) 「주택법」 제14조(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③ 삭제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3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등록사업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8)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원 피해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임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향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음.

- “추진위/조합 공공지원”(사업별설명서 1190p, 예산서 327p)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한 구역에 대해 추진 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직접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억 2천6백만원을 증추경하였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추진위/조합 공공지원	4월말 기준 87% 집행 (12개소 추가지원 필요)	826	500	326	65.3%

- '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3년에 정비구역 지정과 주민동의 징구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65%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본예산 편성 산출 근거와 달리 5개소¹⁹⁾에 대한 예산 전액을 조기 소진하게 되어 추진위 구성 5개소, 조합 직접설립 7개소를 추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사업별설명서 1194p, 예산서 328p)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선정 단계부터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분쟁 및 갈등을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개소²⁰⁾에 대한 ‘정비사업 갈등 조정·

19) 조합설립 직접지원 2개소 247백만원, 추진위 구성지원 3개소 217백만원 지원

중재²¹⁾와 30개소²²⁾에 대한 ‘입찰지침, 계약·사전컨설팅’²³⁾을 위하여 2억 7백만원을 증추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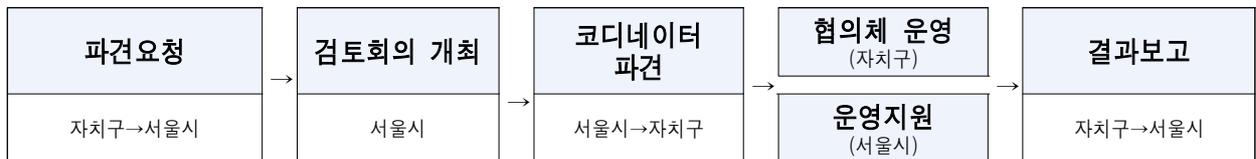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사장 갈등관리 강화	478	271	207	76.4%

- '24년도 본예산은 정비구역 90개소에 대한 구역전담제 운영 등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34% 감액된 2억 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정비사업장 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금년 3월 시공사 선정부터 준공 및 입주까지의 전 단계에 걸친 지원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였고²⁴⁾,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정·배포하였음.

20) 정비사업(리모델링 포함) 10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0개소

21) <갈등조정 및 중재(코디네이터 파견) 추진 절차>



22) 정비사업 13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개소

23) <사전컨설팅(입찰지침서 및 계약서) 추진 절차>



24) 2024.3.20. 공동주택지원과-4899, 행정2부시장 방침 제63호

- 금회 추경은 이러한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현재 분쟁이 발생 중인 정비사업장에 대한 갈등 조정 및 중재(20개소),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입찰 지침을 제공하고 계약을 위한 사전컨설팅(30개소)을 통해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별설명서 1200p, 예산서 329p)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답십리로의 병목(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625~588-176번지에 위치한 굴다리 하부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임.

-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2009년도 선정한 사업비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사비, 실시설계비, 설계감리비로 16억 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타당성조사 용역 및 투자심사²⁵⁾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5천만원 감액되어 계약되었고, 낙찰차액 1억 5천만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5억원을 감액하는 사안으로, 향후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수립 시 명확한 비용산출을 통해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재정비촉진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투자심사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 설계비 감액	1,182	1,682	△500	△29.7%

○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별설명서 1204p, 예산서 331p)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직권해제('17.3.30.)된 옥인1주택

25) 총사업비 40억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재개발정비구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폐가로 방치 중인 옥인동 윤씨가옥(옥인동 47-133번지)의 붕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비 6억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려는 것임.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한옥 4.0 재창조 관련 윤씨가옥 리모델링 추진	1,053	423	630	148.9%

- 윤씨가옥은 1900년대 상류층 한옥으로서의 공간구성 등 우수한 면모를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1977년 시 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나, '97년 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이후 오랜기간 방치됨에 따라 서까래와 지붕 등이 심각하게 부패되고 구조재가 탈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2022년말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빈집활용사업을 통해 '22년 말 31억을 투입하여 매입하였음.
- 현재 소관부서(주거환경개선과)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²⁶⁾'에 따라 윤씨가옥을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건축물로 정비하되, 2025년 1월 개관하여 숙박·전시 등 개방형 복합문화시설 등 사업구역 내 앵커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용역 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어 시공에 필요한 비용 6억 3천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를 추경으로 편성하여 금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직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됨.

26) 2023.2.3.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호

- 앵커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입한 윤씨가옥의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한 것으로, 당초 '23년 중에 공사 착공 계획과 달리 실시설계 용역기간 연장 등으로 시공 예산을 불용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예산편성 사업추진에 있어 면밀한 일정을 수립하여 불용률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됨.

○ (신규)“휴먼타운2.0 이자차액 보전”(사업별설명서 1208p, 예산서 331p)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불량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²⁷⁾ 추진 대상지 내에서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자금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지원(보전)하기 위해 3억원²⁸⁾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사업특별회계)	휴먼타운 2.0 이자차액 보전	휴먼타운 구역 내 이차지원으로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추진	300	-	300	순증

- 이 사업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²⁹⁾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자금을 융자(대출) 받은 사업자에게 최대 3%이하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저층주택 인허가가 급감한 시점에서 소형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고, 비아파트 유형의 주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27) 2023.9.18.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1호

28) 이차보전금(225,000천원 = 30억 융자×10개소×3%(이자차액)×3개월)과 홍보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5천원을 포함한 금액

29)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연면적의 30%이하, 세대당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신규)“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별설명서 1211p, 예산서 331p)은 서울시가 `23년 11월 6일 수립한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³⁰⁾의 세부 추진 과제로서 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를 기존 공공부문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응용 소프트웨어 재개발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지역건축안전센터 (일반회계)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민간건설현장 확대 적용	229	-	229	순증

- 금년 본예산 편성 당시 소관부서(지역건축안전센터)는 해당 예산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포함하여 사전절차³¹⁾를 이행하였으나,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를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사업임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유사 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금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 국비매칭 사

30) 2023.11.24.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

31) '24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완료(결과: 예산조정)

업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추경안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는 사업은 임대주택 매입 사업인 ‘청년 안심주택 SH 선매입’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으로, 주택·건설분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비 상승 등 불리한 사업시행 여건 하에서 지원 받은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되어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3회계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한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어 금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편성된 예산의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요구됨.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조윤길	02-2180-8208

붙임

주택정책실 추경 사업 별 예산집행 현황('24.6.14.기준)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주택정책과	기본경비	합계	600,003	211,130	211,130	388,873	35.2%
		사무관리비	201,725	100,865	100,865	100,860	50.0%
		공공운영비	6,278	6,278	6,278	-	100.0%
		국내여비	296,940	56,253	56,253	240,687	1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000	7,004	7,004	6,996	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60	4,530	4,530	4,530	50.0%
		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	72,000	36,200	34,000	35,800	47.2%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합계	115,603,328	31,026,878	31,026,349	84,576,979	26.8%
		사무관리비	20,000	10,000	10,000	10,000	50.0%
		사회보장적수혜금	700,000	-	-	700,000	-
		이차보전금	114,883,328	31,016,878	31,016,349	83,866,979	27.0%
주택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합계	12,000,000	10,033,532	10,035,932	1,964,068	83.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0	49,134	49,134	250,866	16.4%
		사회보장적수혜금	11,700,000	9,984,398	9,986,798	1,713,202	85.4%
전략주택 공급과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합계	16,541,000	7,082,500	7,082,500	9,458,500	42.8%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1,580,000	5,347,500	5,347,500	6,232,500	46.2%
		출자금	4,961,000	1,735,000	1,735,000	3,226,000	35.0%
공공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회 운영	합계	20,262	20,262	15,260	4,998	75.3%
		사무관리비	15,260	15,260	15,260	-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5,002	5,002	4,998	50.0%
공공주택과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 등 매입	합계	29,393,991	7,808,612	7,564,891	21,829,100	25.7%
		자산및물품취득비	29,393,991	7,808,612	7,564,891	21,829,100	25.7%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합계	3,461,116	1,062,670	131,875	3,329,241	3.8%
		사무관리비	10,000	7,300	7,300	2,700	73.0%
		시설비	1,055,370	1,055,370	124,575	930,795	11.8%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445,945	-	-	1,445,945	-
		공사 공단자본전출금	949,801	-	-	949,801	-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합계	36,168,021	-	-	36,168,021	-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773,545	-	-	20,773,545	-
		공사 공단자본전출금	15,394,476	-	-	15,394,476	-
공공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합계	144,000	-	-	144,000	-
		사무관리비	144,000	-	-	144,000	-
주거정비과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합계	500,000	500,000	500,000	-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500,000	500,000	-	100.0%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합계	287,045	124,429	67,739	219,306	23.6%
		사무관리비	287,045	124,429	67,739	219,306	23.6%
건축기획과	기본경비	합계	74,403	37,288	37,288	37,115	50.1%
		사무관리비	56,223	28,198	28,198	28,025	5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600	6,300	6,300	6,300	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80	2,790	2,790	2,790	50.0%
재정비축진 사업과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합계	1,682,000	1,019,498	-	1,682,000	-
		시설비	1,540,000	1,019,498	-	1,540,000	-
		감리비	142,000	-	-	142,000	-
주거환경 개선과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 거환경개선사업	합계	449,730	107,184	80,509	297,151	17.9%
		사무관리비	6,000	3,253	3,253	2,000	54.2%
		공공운영비	2,000	131	131	1,650	6.6%
		시설비	441,730	77,125	77,125	293,501	17.5%